외국인요양보호사교육원 운영규정

제정 2026.02.23

제1조(명칭) 본 교육원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평생교육원 부설 외국인요양보호사교육원(이하 “본 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본 교육원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주요사업) 본 교육원은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본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
2. 본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타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
3. 국내 거주 국적 미취득 한국어능통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
4. 기타 본 교육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 사업

제4조(조직) ① 본 교육원의 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겸한다.

②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본 교육원은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초빙교수급 이상의 상근 교원을 두고, 교육과 연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④ 본 교육원은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5조(강사의 임용 등) ① 강사는 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인 자로 선발한다. (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)

② 강사 또는 보조인력 등의 세부적인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(보건복지부)에 따른다.

제6조(재정)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교비지원금, 수강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7조(교육 및 연구 장려) 본 교육원은 필요시 우수 강사를 선정하여 우수 강사료를 별도로 책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본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(보건복지부)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